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영학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년 12월 10일
- 회부일자 : 2019년 12월 10일

3. 제안이유

-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 위임권한의 변경, 근거 범조항 개정, 위임사무명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신 설 : 2건(별표 1)

<근거법령개정에 따른 신설 2건>

- (균형발전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대상 기반시설(1건)
 - '빛물저장 및 이용시설' 사무명 신설
- (수질관리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1건)
 -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명 신설

○ 삭 제 : 10건(별표 1)

<중복위임사무 삭제 1건>

- (자연재난과) 지방하천내 공작물 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 공사의 실시 계획인가(변경)·고시 및 검사의뢰·준공검사·공사비예치에 관한 업무(1건)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삭제 9건>

- (자연재난과) 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에서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에 관한 업무(1건)
 - '죽목의 식재' 사무명 삭제
- (식의약안전과)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사무(3건)
 -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 교부', '사고마약류 발생 및 처리사항 보고',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신고 양도승인' 사무명 삭제
- (균형발전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대상 기반시설(5건)
 - '운동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공동묘지' 사무명 삭제

○ 그 밖의 개정사항 : 13건(별표 1)

<위임사무명 개정 : 9건>

- (자연재난과 : 7건)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건)
 - 지방하천 구역에서 허가 및 처분 등 필요한 조치(2건)
 - 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에서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2건)

- 지방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 인가· 고시· 검사의뢰 및 준공검사(1건)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 조사· 통지(1건)
- (균형발전과 : 2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대상 기반시설(2건)
 - 장례식장 → 장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근거 법조항 개정 : 4건>

- (자연재난과 : 2건)
 - 지방하천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에 관한 업무(1건)
 - 도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업무(1건)
- (수질관리과 : 2건)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2건)

5.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 위임권한의 변경, 근거 법조항 개정, 위임사무명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균형발전과의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과 수질관리과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명을 신설하고,

둘째, 자연재난과의 중복 위임사무 1건과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자연재난과, 식의약안전과, 균형발전과의 사무명 9건을 삭제하고,

셋째, 자연재난과와 균형발전과의 9개 사무명을 개정하고, 자연재난과와 수질관리과의 4건의 근거 법조항을 개정하는 것임.

이 개정조례안은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신규 위임사무, 위임권한의 변경, 근거 법조항 개정, 위임사무명 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